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
<p>제15조 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유예</p> <p>② 1.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2.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8백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3.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4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제17조 자문료의 분배</p> <p>①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기술, 법률, 경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동 교직원에게 그 자문에 따른 수입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.</p> <p>② 자문결과에 따라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이를 분배한다.</p> <p>[별지 제4호 서식] 기술자문 계약서</p>	<p>제15조 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유예</p> <p>② 1. 수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2.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3. 노하우기술 이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.(2019. 1개정)</p> <p>15조의2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 현물출자한 기술에 대한 발명자 보상은 기술지주회사, 발명자 및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(2019. 1신설)</p> <p>제17조(삭제)</p> <p>[별지 제4호 서식](삭제)</p> <p>[별지 제7호 서식](제정 2019. 1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019. . . )</p> <p>1. (시행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제15조 “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규예”에 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실시료 입금일을 기준일로 적용한다.</p>